<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정일 : 1953년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출처 : 일본 e-GOV (방문일 : 2021년 7월 13일)

**기 업로드되었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일 2021년 6월 1일)의 2025년 4월 1일 개정 원문 및 번역문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일 2025년 4월 1일) 최신 개정본 바로가기 :**
***https://foodlaw.foodinfo.or.kr/lawview/detail.do?docNo=2508&docDtl=2539&docGrpCd=51&menuKey=143&currentPageNo=1***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953년 정령 제229호)

내각은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및 제5항, 제20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정령을 제정한다.

**(법 제18조 제3항의 재질)**

**제1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재질은 합성수지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법 제25조 제1항의 검사)**

**제4조** 법 제25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첨가물은 타르색소이며, 그 검사를 하는 자는 등록검사기관이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縣)[1] 지사 또는 등록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등록검사기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품을 채취하도록 한다.

4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등록검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한 시험품에 대해 후생노동성 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고, 이것이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이 규정하는 표시를 교부하도록 한다.

**(법 제26조 제1항의 검사)**

**제5조**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도도부현 지사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통지를 한 후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가

---

1) 역자주.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검사의 항목, 시험품의 채취방법, 검사의 방법,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검사명령서를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2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등록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도도부현 지사 또는 등록검사기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에는 검사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험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법 제26조 제2항의 검사)**

**제6조**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등록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등록검사기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에는 검사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험품을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법 제26조 제3항의 검사)**

**제7조** 전조의 규정은 법 제26조 제3항의 검사에 대해 준용(準用)한다.

**(식품위생검사시설)**

**제8조**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이하 본조에서 '도도부현 등'이라고 한다)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 등이 설치하는 식품위생검사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배치에 대해 조례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2 도도부현 등이 전항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제1호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제2호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도록 한다.

1) 식품위생검사시설의 설비

2) 식품위생검사시설에 배치하는 직원

3 제1항의 식품위생검사시설에서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제9조** 식품위생감시원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여야 한다.

1)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수의사

3)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구 대학교령(1918년 칙령 제388호)에 따른 대학 또는 구 전문학교령(1903년 칙령 제61호)에 따른 전문학교에서 의학, 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학 또는 농예화학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해당 과정을 마치고 동법에 따른 전문직대학의 전기(前期)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

4) 영양사로 2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자

2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전항 제1호의 양성시설에 대해 준용한다.

**(등록검사기관의 등록 수수료액)**

**제10조** 법 제31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액은 20만 2,600엔이다.

**(등록검사기관의 등록 유효기간)**

**제11조** 법 제34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이다.

**(등록검사기관의 등록갱신 수수료액)**

**제12조** 법 제3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액은 13만 1,000엔이다.

**(식품 등의 지정)**

**제13조** 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은 전지분유(全粉乳, 그 용량이 1400g 이하인 캔에 든 것에 한한다), 가당분유, 조제분유, 식육제품(햄, 소시지, 베이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어육햄, 어육소시지, 방사선조사(照射)식품, 식용유지(탈색 또는 탈취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에 한한다), 마가린, 쇼트닝 및 첨가물(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이 정해진 것에 한한다)이다.

**(양성시설의 등록)**

**제14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48조 제6항 제3호의 양성시설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 수업(修業)연한, 수강과목, 기타 사항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등록의 신청)

**제15조** 법 제48조 제6항 제3호의 양성시설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의 신고)

**제16조** 법 제48조 제6항 제3호의 등록을 받은 양성시설(이하 '등록양성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고의 징수)

**제17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양성시설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제18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양성시설이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차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의 신청)

**제19조** 등록양성시설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 취소를 받으려 할 때에는 해당 설치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시)

**제20조**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公示)해야 한다.

1) 법 제48조 제6항 제3호의 등록을 했을 때.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가 있었을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48조 제6항 제3호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

(강습회의 등록)

**제21조** 법 제48조 제6항 제4호의 강습회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강습회의 실시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결격조항)**

**제22조**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는 법 제48조 제6항 제4호의 강습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법인으로 그 업무를 하는 임원 중에 전 2호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가 있는 것

**(등록의 기준)**

**제23조** 도도부현 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강습회의 실시자가 법 제49조의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강습회를 실시하는 것일 때에는 그 등록을 해야 한다.

**(강습회의 실시의무)**

**제24조** 법 제48조 제6항 제4호의 등록을 받은 강습회(이하 '등록강습회'라고 한다)의 실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강습회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등록강습회를 실시해야 한다.

2 등록강습회의 실시자는 공정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등록강습회를 실시해야 한다.

3 등록강습회의 실시자는 등록강습회의 실시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계획을 해당 등록강습회의 실시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변경의 신고)**

**제25조** 등록강습회의 실시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2주 전까지 해당 등록강습회의 실시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업무의 휴폐지)

제26조 등록강습회의 실시자는 등록강습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내용을 해당 등록강습회의 실시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제27조 등록강습회의 실시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와 사업보고서(그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電磁)적 기록(전자(電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일)이 작성된 경우의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차항에서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2 등록강습회를 수강하려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등록강습회의 실시자의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등록강습회의 실시자가 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謄寫)의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3)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이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 교부의 청구

(적합명령)

제28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강습회의 실시자가 법 제49조의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강습회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것을 인정할 때에는 해당 등록강습회의 실시자에게 동조의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강습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

제29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강습회의 실시자가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등록강습회의 실시자에게 등록강습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또는 등록

강습회의 실시방법, 그 밖에 업무방법의 개선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강습회의 실시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등록강습회에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 제1항 또는 차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3)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2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했을 때.
4) 전 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법 제48조 제6항 제4호의 등록을 받았을 때.

(장부의 기재)

**제31조** 등록강습회의 실시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준비하여 등록강습회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보고의 징수)

**제32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및 본 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등록강습회의 실시자에 대해 해당 등록강습회의 업무 또는 경리현황에 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

**제33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및 본 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등록강습회 실시자의 업무를 하는 장소에 들어가 업무현황 또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시)

**제34조**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48조 제6항 제4호의 등록을 했을 때.

2)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
3)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강습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강습회의 업무 정지를 명령했을 때.

(소규모 영업자 등)

**제34조의 2**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자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에 병설되거나 인접한 점포에서 그 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매 판매하는 자
2) 음식점 영업(식품을 조리하거나 설비를 마련하여 손님에게 취식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차조 제1호에서 동일) 또는 조리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용기포장에 담지 않거나 용기포장으로 싸지 않은 상태의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한다. 동조 제2호에서 동일)로 식품을 조리하고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그 밖의 식품을 조리하는 영업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3) 용기포장에 담거나 용기포장으로 싼 식품만을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
4) 전 3호에 게시한 영업자 외에 식품을 분할하여 용기포장에 담거나 용기포장으로 싸서 소매 판매하는 영업자, 그 밖에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안팎의 청결유지, 쥐 및 곤충의 구제(驅除), 그 밖에 일반적인 위생관리와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취급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른 활동을 통해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영업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영업의 지정)

**제35조**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 영업
2) 조리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용기포장에 담지 않거나 용기포장으로 싸지 않은 상태의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세정하기 위한 장치, 그 밖의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로 식품을 조리하고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3) 식육판매업 (식육을 오로지 용기포장에 담긴 상태로 매입하여, 그대로의 상태로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4) 어패류판매업 (점포를 갖추고 선어패류(냉동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호 및 차

호에서 동일)를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어패류를 산 채로 판매하는 것, 선어패류를 오로지 용기포장에 담긴 상태로 매입하여 그대로의 상태로 판매하는 것 및 동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어패류경매영업 (선어패류를 수산시장에서 경매,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집유업(集乳業) (생유를 집하하여 이를 보존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유(乳)처리업 (생유를 처리하거나 음용되는 유(乳)의 제조(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동호에서 동일)를 하는 영업 또는 생유를 처리하거나 음용되는 유의 제조를 하고, 이와 함께 유제품(음료에 한한다) 또는 청량음료수의 제조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특별우유착유처리업 (우유를 착유하고 살균하지 않거나 저온살균의 방법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성분규격을 갖춘 우유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식육처리업 (식용을 목적으로 식조(食鳥) 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조검사에 관한 법률(1990년 법률 제70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조 이외의 새 또는 도축장법(1953년 법률 제114호)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짐승(獸畜) 이외의 가축과 짐승을 도살 또는 해체하거나 해체된 짐승의 고기, 내장 등을 분할 또는 잘게 써는(細切) 영업을 말하며, 제26호 또는 제2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식품의 방사선조사(照射)업

11) 과자제조업 (과자(빵 및 앙금류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26호 또는 제2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아이스크림류제조업 (아이스크림, 아이스셔벗, 아이스캔디, 그 밖에 액체식품 또는 이것에 다른 식품을 혼화(混和)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유제품제조업 (분유, 연유, 발효유, 크림, 버터, 치즈, 유산균음료,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유(乳)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소분(고형물의 소분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량음료수제조업 (생유를 사용하지 않는 청량음료수 또는 생유를 사용하지 않는 유제품(음료에 한한다)의 제조(소분을 포함한다)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식육제품제조업 (햄, 소시지, 베이컨,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본 호에서 '식육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식육제품과 함께 식육 또는 식육제품을 사용한 반찬(そうざい)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수산제품제조업 (어패류, 그 밖의 수산동물 또는 그 알(이하 본 호에서 '수산동물

등'이라고 한다)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해당 식품과 함께 해당 식품 또는 수산동물 등을 사용한 반찬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26호 또는 제2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7) 빙설(氷雪)제조업

18) 액란제조업 (계란에서 난각을 제거한 것의 제조(소분을 포함한다)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9) 식용유지제조업 (마가린 또는 쇼트닝제조업을 포함한다)

20) 미소(일본식 된장) 또는 간장제조업 (미소 또는 간장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이들과 함께 이들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1) 주류제조업 (주류의 제조(소분을 포함한다)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22) 두부제조업 (두부를 제조하는 영업 또는 두부와 함께 두부 또는 두부를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副産物)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3) 낫토(納豆)제조업

24) 면류제조업 (면류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26호 또는 제2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5) 반찬(そうざい)제조업 (일반적으로 부식(副食物)으로 쓰이는 조림(煮物)(츠쿠다니(つくだ煮)[2]를 포함한다), 구이(燒物)(볶음(いため物)을 포함한다), 튀김(揚物), 찜(蒸し物), 초무침(酢の物) 또는 무침(あえ物) 또는 이들 식품과 쌀밥, 그 밖에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품을 조합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15호, 제16호, 제22호 또는 차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6) 복합형반찬(そうざい)제조업 (전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과 함께 제9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에 관련된 식육의 처리를 하는 영업(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하 본 호에서 '중요공정관리'라고 한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8호에서 동일) 또는 제11호, 제16호(어육연제품(어육햄, 어육소시지, 고래고기 베이컨,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에 관련된 영업을 제외한다. 제28호에서 동일) 또는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에 관련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중요공정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호에서 동일)을 말한다)

27) 냉동식품제조업 (제25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에 관련된 식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된 식품의 냉동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차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8) 복합형냉동식품제조업 (전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과 함께 제9호에서 규정하는 영

---

2) 역자주. 어류, 해조류를 간장, 설탕, 미림 등을 넣고 조려 만든 보존식품

업에 관련된 식육의 처리를 하는 영업 또는 제11호, 제16호 또는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에 관련된 식품(냉동품에 한한다)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9) 절임식품(漬物)제조업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절임식품과 함께 절임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밀봉포장식품제조업 (밀봉포장식품(레토르트파우치 식품, 통조림, 병조림, 그 밖에 용기포장에 밀봉된 식품을 말한다)으로 그 보존에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지 않는 것(냉동 또는 냉장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 보툴리누스균, 그 밖의 내열성 아포(芽胞)를 형성하는 혐기성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없는 것이 확실한 식품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1) 식품의 소분업 (오로지 제11호, 제13호(고형물의 제조에 관련된 영업에 한한다), 제15호, 제16호, 제19호, 제20호 또는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제조된 식품을 소분하여 용기포장에 담거나 용기포장으로 싸는 영업을 말한다)

32) 첨가물제조업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이 정해진 첨가물의 제조(소분을 포함한다)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영업)**

**제35조의 2**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영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첨가물의 수입을 하는 영업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저장만을 하거나 운반만을 하는 영업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을 제외한다)

3) 용기포장에 담거나 용기포장으로 싼 식품 또는 첨가물 중 냉동 또는 냉장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 부패, 변패, 그 밖의 품질의 열화(劣化)로 인해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것의 판매를 하는 영업

4) 기구 또는 용기포장(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질 이외의 원재료가 사용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한다)의 제조를 하는 영업

5)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영업

**(중독 원인의 조사)**

**제36조** 법 제63조 제2항(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조 제1항에서 동일)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이 실시해야 하는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난감(이하 본조 및 차조 제2항에서 '식품 등'이라고 한다) 및 병인물질을 밝히는데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환자 또는 그런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 사체의 혈액, 분변, 소변 또는 토사물, 그 밖의 물질 또는 중독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 또는 동물을 사용하는 시험을 통한 조사

**(중독에 관한 보고)**

**제37조** 보건소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본조에서 '식중독조사'라고 한다)에 대해 전조 각호의 조사의 실시상황을 차례대로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이하 본조에서 '도도부현 지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도도부현 지사 등은 법 제63조 제3항(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중독된 환자의 수,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등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차례대로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보건소장은 식중독조사를 마친 후, 신속히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 등은 전항의 보고서를 수리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도시 등의 특례)**

**제38조**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본조에서 '지정도시'라고 한다)에서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도시가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1947년 정령 제16호) 제174조의 34의 규정을 따른다.

2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2 제1항의 중핵시(이하 본조에서 '중핵시'라고 한다)에서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4조의 49의 14의 규정을 따른다.

**(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의 영업)**

**제39조** 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3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게시한 영업이다.

(소비자청 청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권한)

**제40조** 법 제80조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법 제19조 제1항(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의 2 제2항 및 제3항과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이다.

(사무의 구분)

**제41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다.

부칙

1 본 정령은 195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식품위생법 제29조의 2 단서에서 규정하는 영업 및 처분을 규정하는 정령(1950년 정령 제52호)은 폐지한다.

부칙 (1954년 11월 30일 정령 제300호)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6년 8월 21일 정령 제265호)

1 본 정령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56년 법률 제147호) 및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1956년 법률 148호)의 시행일(195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령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정령 및 칙령의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지사, 그 밖에 도도부현의 기관이 처리하거나 관리 및 집행하고 있는 사무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 또는 지정도시의 시장, 그 밖의 기관으로의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각각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1956년 정령 제253호) 부칙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1957년 7월 5일 정령 제176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 중 제1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제4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규정은 1958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규정은 195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8년 6월 30일 정령 제195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195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0년 9월 10일 정령 제249호)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년 12월 26일 정령 제427호)**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년 12월 23일 정령 제378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6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년 10월 2일 정령 제324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196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2의 개정규정은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년 7월 3일 정령 제228호) 일부발췌**

1 본 정령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년 3월 18일 정령 제28호) 일부발췌**

1 본 정령은 196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년 7월 15일 정령 제191호) 일부발췌**

1 본 정령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2의 개정규정은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년 8월 28일 정령 제323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197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년 4월 26일 정령 제112호)**

본 정령은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년 5월 1일 정령 제119호)**

1 본 정령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령의 시행 전에 도도부현 지사가 한 허가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본 정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실시한 상태의 허가의 신청, 그 밖의 행위로 본 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장(長)이 관리 및 집행하게 되는 사무와 관련된 것은 본 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장이 한 허가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장에 대해 한 허가의 신청, 그 밖의 행위로 간주한다.

**부칙 (1981년 3월 27일 정령 제44호) 일부발췌**

1 본 정령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년 4월 2일 정령 제76호)**

본 정령은 198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년 1월 27일 정령 제8호)**

본 정령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년 3월 22일 정령 제56호)**

본 정령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년 12월 27일 정령 제369호)**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본 정령의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영양사법, 수도법 또는 제과위생사법(이들 법률에 따른 정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본 정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이들 법률(이들 법률에 의거한 본 정령에 따른 개정 전의 정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상태의 허가 등의 신청, 그 밖의 행위(이하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로, 본 정령의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해야 하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본 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본 정령의 시행일에 새롭게 해당 행정사무를 하게 되는 자(이하 '신 사무집

행자'라고 한다)가 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 사무집행자에 대해 한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3 본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1991년 3월 19일 정령 제39호)**

본 정령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년 3월 25일 정령 제52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년 3월 24일 정령 제64호)**

본 정령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년 7월 1일 정령 제223호)**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년 12월 21일 정령 제398호)**

본 정령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중 제2편 제12장의 개정규정과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의 시행일(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년 1월 24일 정령 제7호)**

본 정령은 식품위생법 및 영양개선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일(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년 5월 2일 정령 제109호)**

본 정령은 199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년 11월 20일 정령 제318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5 본 정령의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지역보건대책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특별구의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한 허가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본 정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실시한 상태의 허가의 신청, 그 밖의 행위(이하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로, 본 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보건소 설치시 등의 장(長)이 관리 및 집행하게 되는 사무와 관련된 것은 본 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보건소 설치시 등의 장이 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보건소 설치시 등의 장에 대해 한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부칙 (1997년 3월 19일 정령 제37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년 3월 24일 정령 제57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년 3월 28일 정령 제82호)**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년 11월 14일 정령 제330호)**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7월 22일 정령 제231호)**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12월 8일 정령 제393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3월 17일 정령 제65호)**

본 정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6월 7일 정령 제309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7월 26일 정령 제260호)**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1월 31일 정령 제28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행정절차 등 상의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6월 25일 정령 제281호)**

본 정령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8월 1일 정령 제350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12월 10일 정령 제505호)**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조 제3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일(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승인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개정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

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13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의 해당 승인에 관한 본 정령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 후의 최초의 갱신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신령(新令)'이라고 한다) 제2조의 규정 중 '3년'은 '개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제7조의 3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2002년 2월 26일 이전에 해당 승인을 받은 자는 2004년 2월 27일부터 2005년 2월 26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승인을 받은 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으로 한다.

(타르색소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시행일 전에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구령(舊令)'이라고 한다)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이 실시한 검사 및 이에 합격한 것으로서 교부한 표시는 신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 및 이에 합격한 것으로서 교부한 표시로 간주한다.

2 본 정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구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검사 신청이 되어 있는 검사 및 이에 합격한 것으로서 교부하는 표시는 신령 제4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른다.

3 전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를 따르도록 된 검사 및 표시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위생감시원 양성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본 정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구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의 지정을 받은 상태의 양성시설은 신령 제9조 제1호의 등록을 받은 양성시설로 간주한다.

(식품위생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개정부칙 제1조 제3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 시에 실제로 개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실시해야 할 동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작성과 이들 서류의 후생노동성 장관에 대한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2003년 12월 12일 정령 제511호)**

본 정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조 제4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일(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4월 28일 정령 제189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회사법의 시행일(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8월 14일 정령 제217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의 시행일(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12월 21일 정령 제407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4조 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동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지역보건법(1947년 법률 101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시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특별구의 조례가 제정, 시행되기까지의 사이에는 동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해당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5년 2월 4일 정령 제40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3월 31일 정령 제128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시행일 전에 본 정령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승인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위(이하 본항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본 정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본 정령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상태의 승인 등의 신청, 그 밖의 행위(이하 본항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로 시행일에 이들 행위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해야 하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시행일 이후의 본 정령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정령의 적용에 대해서는 본 정령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정령의 상당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2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시행일 전에 본 정령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기관에 대해 보고, 신고, 그 밖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으로,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를 본 정령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정령의 상당규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상당의 기관에 보고, 신고, 그 밖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본 정령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년 9월 1일 정령 제232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정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10월 9일 정령 제122호)**

본 정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10월 9일 정령 제123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정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차조에서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조 제3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일(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본 정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개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이하 본조에서 '구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차항에서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각호의 영업(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5조 각호의 영업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영업에 한한다)을 하고 있는 자는 해당 허가에 관련된 구법 제

52조 제3항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

2 본 정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구법 제52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구 시행령 제35조 제23호 및 제24호의 영업을 동일 시설에서 하고 있는 자 또는 동조 제25호 및 제26호의 영업을 동일 시설에서 하고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 자가 하고 있는 해당 각각의 영업의 허가에 관련된 구법 제52조 제3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시기가 늦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해당 각각의 영업을 할 수 있다.